

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05.8.4>

공고 제 호

정·부위원장호선공고

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5조(제2항)·(제4항)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(정)·(부)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호선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직 위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직 업	호선일자	비 고

년 월 일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[인]